

2026년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20조 (이용계약 체결 및 수급자 설명 의무)

- ① 본 사업소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보호자의 수발 경감을 위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, 계약 시 제품별 제공방식, 본인부담금, 설치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한다.
- ② 계약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며, 기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에는 품목·제품명, 복지용구 제품코드, 급여 방식(대여/구매), 판매일 또는 대여기간, 금액, 본인부담금 등을 명시하고, 2부 작성하여 당사자 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21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- ① 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1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2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 3.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
- ② 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 1.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2.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
 3.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, 장기 부재 등 관련 정보를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제22조 (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산정)

- ① 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한다.
- ② 본인부담금은 구매 시에는 1회, 대여 시에는 월 단위로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금액 차액은 소급 정산한다.
- ③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(현행 160만 원)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,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.

제23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 필요의 종료, 사망, 이사 등으로 복지용구 급여가 불필요해질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소는 이를 수용한다.
- ② 계약 해지 시 선납한 본인부담금은 잔여기간에 따라 소급 정산하며,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안내 후 환급 또는 추가 청구한다.
- ③ 계약 내용(제품 변경, 대여기간 연장 등)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 확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제24조 (기타 비용 및 감경 대상 안내)

- ① 공단 부담을 초과하는 급여범위 외 사용, 비급여 항목, 추가 설치 및 운송 비용 등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.
-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본인부담률
일반 수급자	15%
기타의료급여 및 감경 대상자	9.0% 또는 6.0%
기초생활 수급자	0%

- ③ 본인부담률에 관한 기준과 변경사항은 공단 고시에 따라 반영하며, 수급자에게 사전 안내한다.

행복한노인요양센터